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Q&A>

Q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나요?

- A.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금지로 규정(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되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특례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광고에 한하여 국제공항, 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Q2.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A.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및 확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 가능합니다.

Q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필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 A.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Q5. 외국인 유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의료기관에 관한 단순 정보(약도, 위치 등)를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①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③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Q6. 외국어로 표기된 국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가 개원한 요양병원원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심의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광고 도안 외에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과 공증 받은 외국어 의료광고 도안 국문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표기된 국내 의료광고는 추가제출 서류 외 국내 의료광고 심의절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Q7. 심의 받은 외국어 의료광고는 모든 장소에서 게재 가능한가요?

- A.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국어 광고는 면세점, 국제공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광고가 가능(2019년 11월 기준 전국 93개 장소)하며 동법 제3항에 의거하여 장소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는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외국어 의료광고 위반사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광고매체	
교통시설 내 간판	
위반내용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미등록 유치의료기관의 의료광고

광고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위반내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정보(일 본어 약도)를 게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예약 페이지 운영

(출처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보건복지부, 2020.7.)